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도입에 따른 세무상 효과*

손 혁** · 정재정***

〈요 약〉

2019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는 리스이용자의 리스선택권을 제한했다. 즉 리스이용자는 리스제공자의 리스분류와 상관없이 사용권자산으로 자본화해야 하며 리스부채도 동시에 인식해야 한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모든 국가에서 항공업, 해운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자본구조와 경영성과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에서는 단기리스와 소액리스를 제외한 임대차계약을 사용권자산으로 자본화해야 하므로 유통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재무적 효과 외에도 세무조정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2019년부터 적용되는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의 도입에 따른 법인세법의 세무상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국가별 세무적 영향을 조사하였다. 그 다음 본 연구는 각 산업의 사례를 분석하여 개정된 리스회계기준으로 인한 세무조정의 크기가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행 법인세법의 유지와 기업회계를 존중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법인세법의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비교, 분석하였다. 현행 법인세법은 리스제공자의 분류에 따라 리스자산의 처리주체가 달라지고 감가상각 적용주체가 달라진다. 따라서 현행 세법에 의거하는 경우 운용리스 사용자는 복잡한 세무조정이 발생하고 그 금액의 중요성도 상당히 크다. 또한 리스자산의 분류, 리스부채의 평가 등 세법상 미비한 규정은 세무조정비용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리스와 조세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시함으로써 세무당국과 기업에게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나아가 조세산출비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리스,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사용권자산, 리스이용자, 법인세법, 세무조정

* 본 연구는 “한국세무학회 2020년 춘계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공모 논문”입니다. 저자들은 세무회계저널 편집위원장과 익명의 심사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계명대학교 경영대학 회계학전공 부교수, hshaw@kmu.ac.kr, 주저자

***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경영학과 조교수, jgjung0905@da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20년 9월 17일 1차수정일 2020년 12월 24일 게재확정일 2020년 12월 31일

I. 서 론

2019년부터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 제1116호 ‘리스’(IFRS 16 Leases)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이 기준은 기존 리스 관련 K-IFRS 제1017호 ‘리스’(IAS 17 Leases)를 대체한다. 따라서 상장기업과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기업은 2019년부터 개정된 리스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물론 리스회계처리가 변경된다고 리스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즉 리스이용자는 자산을 사용하는 대가로 리스회사에게 이용료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은 리스회계처리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경영자가 운용리스 회계처리에 따른 편익 때문에 리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운용리스를 사용하면 부외금융효과가 있으며(off the balance sheet financing), 재무건전성의 개선은 물론 총자산이익률(return on asset : ROA)이 금융리스를 사용할 때보다 유리하다(Imhoff et al. 1991). 뿐만 아니라 운용리스를 통해 경영자는 보상(compensation)을 전략적으로 수취할 수 있으며 법인세를 절감하는 등 다양한 측면에서 운용리스는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다(Imhoff et al. 1997).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운용리스 선택에 대한 기업의 혜택이 모두 사라지게 되었다. 즉 새로운 리스회계기준은 리스회사의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의 구분과 상관없이 단기리스(12개월 이하)와 소액리스(미화 5,000불 이하)의 자산을 제외하고는 사용권자산으로 자본화해야 한다. 이는 과거 금융리스만 자본화 하는 것과 큰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운용리스를 사용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의 부외금융효과를 더 이상 누리지 못하게 된다. 또한 미래에 지불하기로 약정한 리스료의 현재가치만큼 리스자산과 리스부채가 인식되므로 부채비율이 증가하게 되며, 리스자산의 인식으로 ROA가 감소할 것이다.

이처럼 운용리스의 자본화로 인해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ROA가 감소하면 부채계약(debt covenant)에 반영되는 유동비율, 부채비율 등의 재무건전성 지표들이 악화된다. 특히 리스를 많이 사용하는 항공업이나 해운업의 경우 그 변화가 심할 것이다. 다음은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도입에 따른 기사이다.¹⁾

... 상략 ... 문제는 K-IFRS 개정으로 2019년부터 운용리스를 부채로 인식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2019년 1분기 A항공의 부채비율은 1039.5%로 급증한 것은 이런 배경을 갖고 있다. 지난해 말 A항공의 부채비율은 755.7%였다. 이같은 부채비율 급증은 A항공의 자금 조달비용 증가를 초래했다. 1분기 기준 A항공의 금융기관 차입금의 연이자율은 3.38~4.78%, 기업어음의 연이자율은 최고 5.3%에 달한다 ...하략...

1) 기사제목 : [이슈추적] 운용리스가 뭐길래? 아시아나항공 매각 초래한 회계변경. 더벨류뉴스 2019년 7월 3일자 기사내용 발췌, 수정

이처럼 항공사나 해운업계의 경우 운용리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의 부채비율 상승과 ROA 감소는 개정된 리스회계기준 도입 전부터 예상된 부분이다. 하지만 다수의 점포를 임차하는 금융업, 유통업, 소매업 등 다수의 산업군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즉 해당 기업들은 지금까지 점포를 임차했을 때 임차료로 회계처리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관련 비용을 인식하였으며, 해당 임차료 지불이 리스와 큰 연관이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2019년부터는 장기임차의 경우 이를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의 도입으로 인해 단기리스와 소액리스를 제외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에서도 사용권자산으로 자본화함으로써 기존 금융리스와 동일하게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도입에 따른 세법에 대한 다양한 세무조정 등 영향을 살펴 보았다. 선행연구는 운용리스의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시부인에 대해 주로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는 사용권자산 외에도 리스부채, 전대리스 등 다양한 상황이 세무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본 연구는 리스회계처리의 개정으로 인해 국가 간 세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했다. 대부분의 국가의 법인세법은 과거 리스회계기준에 따라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분류하여 금융리스의 경우만 감가상각과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복잡한 세무조정이 발생하고 있었다. 즉 유럽 등 외국에서도 리스회계기준에 따른 운용리스의 사용권 자산에 대한 세무조정으로 인해 세법을 개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한편,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1116호의 도입에 따른 회계 및 세무상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임차료 지불기업의 사례로 유통업을 영위하는 LH마트와 커피수입, 판매업인 SB커피를 선정하였다. LH마트와 SB커피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도입 후 사용권자산의 인식과 리스부채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부채비율이 증가하였으며 유보액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해운업과 항공업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많은 기업의 경우 개정된 리스회계기준에 의해 유보액의 증가는 물론 각 점포계약에 대한 유보액의 관리도 복잡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많은 기업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리스기준이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리스와 관련된 세법규정은 과거와 동일하다. 세법규정은 리스의 경우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분류하여 운용리스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금융리스의 경우 자본화 하고 금융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은 손금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새로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기준에 의하면 과거 임차료로 처리하던 임대차계약을 갖고 있거나 운용리스 이용자의 경우 사용권자산의 자본화로 인해 복잡한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의 도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세무조정비용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업회계와 세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대안을 현행 세법과 비교, 분석했다. 본 연구는 항공업과 해운업 외에도 유통업 등 장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양한 국제회계기준 적용기업들의 세무조정이 증가하고 있음을 밝혔고 기존 연구를 보완함과 동시에 새로운 리스의 다양한 세무상 효과를 제시했다는 공헌점이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제시한 사항은 리스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조세산출비용을 완화하고 세무당국과 기업의 리스 관련 세법을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Ⅰ장 서론에 이어 제Ⅱ장은 리스도입에 따른 파급효과를 언급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 리스회계기준의 변화로 인한 세무상 효과에 대해 상세히 논의한 후 해외 국가들의 세법의 개정방안을 국가별로 상세히 살펴본다. 제Ⅳ장에서는 LH마트의 사례를 통해 리스도입으로 인한 세무상 효과를 확인한다. 제Ⅴ장은 리스도입에 따른 세법 유지와 개정에 따른 효과에 대해 논의하고, 제Ⅵ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리스관련 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의 변화

리스는 1998년 말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에 처음으로 언급되었다. 즉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분류하였다. 최초 법인세법은 재정경제부령에 의해 금융리스를 정의했으며, 이후 기획재정부 등 금융리스를 정의하는 기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크게 변화한 내용은 없었다.²⁾

하지만 2010년 12월 30일 법인세법시행령의 일부개정을 통해 처음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를 구분하게 되었다.³⁾ 그 이유는 2011년 국제회계기준의 전면도입으로 인해 기업회계의 존중원칙에 따라 금융리스를 구분하게 된 것이다. 당시 도입한 국제회계기준의 리스기준은 K-IFRS 제1017호 ‘리스’(IAS 17 Leases)였으며, 국제회계기준의 금융리스의 분류기준은 기존에 사용하던 기업회계기준서 및 기획재정부령과 크게 차이는 없었다. 즉 소유권이전약정 및 임대료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였고 단지 리스기간과 감가상각기간이 75% 이상, 최소리스료의 현재가치가 리스자산 공정가치의 90% 이상이라는 비율이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사라졌다.⁴⁾

2)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등”이라 한다)이 동법에 의하여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3)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4) 그 이유는 리스선택에 있어 경영자들이 회계공학(accounting engineering)을 수행하여 금융리스를 사용할

이후 2019년 초부터 새로운 리스기준인 K-IFRS 제1116호 ‘리스’가 도입되면서 리스이용자의 경우 리스회사가 인식하는 분류체계와 상관없이 단기리스(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와 소액리스(기초자산 \$5,000 이하)를 제외하고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으로 회계처리하여 과거 금융리스처럼 자본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리스이용자는 미래 지불할 리스료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리스부채로 인식하므로 다양한 재무적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중요한 점은 위 거래가 법적 형식의 리스계약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임대차계약을 포함하여 그 실질이 리스인 모든 계약이 새로운 리스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과거 임차료로 인식하던 경제적 사건이 리스기준의 개정으로 사용권자산으로 자본화를 하게 되므로 리스를 사용하던 항공업, 해운업 등 특정 산업뿐만 아니라 장기 임대차계약을 수행하는 일반 기업의 재무구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한편, 2019년 리스회계기준은 크게 변경되었지만 2020년 말 현재 리스 관련 법인세법의 변화는 거의 없다. 즉 리스개정으로 인한 회계기준 조문 변경에 따른 정비가 수행되었지만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분류는 기존 기업회계기준서와 큰 차이는 없다.

2. 개정된 리스기준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개정된 리스회계기준으로 인해 과거 운용리스를 사용하는 기업들과 장기임차기업들은 더 이상 운용리스의 부외금융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가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이는 자산의 크기를 증가시켜 총자산이익률을 감소시키고 또한 부채비율을 증가시킬 것이다. 포괄손익계산서에는 리스료와 임차료가 인식되지 않으며,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리스부채에 따른 이자비용이 발생한다. 따라서 포괄손익계산서 전반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영업손익의 구성항목으로 인한 증감이 예상된다.

한편, 현금흐름표의 경우 영업비용에 해당하는 운용리스료(임차료)가 반영되지 않으므로 과거 운용리스를 사용하던 기업들의 경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증가한다. 반면 리스부채의 상환으로 인해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은 감소하여 전체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리스의 형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판매후 리스(sales leaseback)를 사용했다. 이는 기업이 자산을 판매함으로써 현금을 확보하고 부채비율을 줄이고 동일자산을 다시 운용리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외금융효과를 누리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개정된 리스회계기준에 따르면 판매후 리스를 수행하더라도 리스로 얻는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개선효과가 거의 사라지게 된다. 이는 판매후 리스가 더 이상 재무구조 개선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함이다. 예를 들어, 감가상각기간 대비 리스기간을 74.99%로 맞추어 운용리스를 사용하려는 가능성을 회피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 제1017호는 특정 비율을 제거하고 ‘상당한 기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위해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암시한다.

또한 전대리스, 집행가능한 리스기간 등 다양한 새로운 개념이 개정된 리스기준에 추가되었다. 이들 개념은 리스선택권의 제한이라기보다는 리스의 실질을 반영한 것이다. 하지만 세법에는 해당 개념들이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다양한 회계, 세무적 쟁점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운용리스를 많이 사용하는 항공사, 해운사 등은 대폭의 부채비율의 상승으로 인해 자본조달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또한 부동산 등을 임차하는 백화점이나 편의점 등 소매유통업의 경우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리스이용자 측면에서 개정된 리스기준으로 인해 총자산이익률,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중요하며, 포괄손익계산서 및 현금흐름표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다. 또한 개정된 리스기준은 다양한 산업과 리스계약의 형태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3. 선행연구

과거 리스 연구들은 리스를 사용하는 주요 이유가 운용리스로부터 발생하므로 운용리스의 사용에서 기업은 어떠한 이점을 얻을 수 있으며,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를 시장이 인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고자 했다. 운용리스는 부외금융효과로 인해 부채비율 등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차입계약을 어기지 않을 수 있다(Imhoff et al. 1991; Imhoff et al. 1997; 이중희 1999; 신승묘 2015). 또한 리스선택은 유효법인세율, 신용등급, 사무자동화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정혜영과 김남인 2000; 이화득 2001; 신승묘 2011). 특히 운용리스의 사용은 경영자의 보상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손혁과 이중희 2015; 손혁과 강순경 2018). 반면 리스를 자본화하든 비용처리하든 기업이 자산을 빌려 쓰는 것은 동일하므로, 이러한 회계적 효과는 자본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주장도 있다(Ely 1995).

하지만 운용리스의 부외금융효과의 문제점은 기준제정자(standards-setter)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결국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를 통해 리스이용자의 경우 리스종류와 관계없이 사용권자산으로 자본화하도록 변경되었다.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의 가장 큰 특징은 리스회사가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것과 상관없이 리스이용자의 경우 리스거래를 자본화하여 리스자산과 리스부채를 재무상태표에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운용리스를 많이 사용하는 항공업이나 해운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급증하고 ROA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다(강유정 등 2019).

이처럼 개정된 리스회계기준이 특정 산업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존재하나, 리스 회계기준과 세법과의 연계점을 살펴본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권혁윤과 정지선(2016)은 레버리지리스에 대한 한,일간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 리스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레버리지 리스가 국제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김현동(2017)은 국제회계기

준 제1116호 도입 후 리스의 사례분석을 통해 세무조정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세법이 기업회계기준의 존중에 따라 세무조정을 그대로 인정할지 아니면 독자적 규정을 만들지 여부는 조세당국의 추후의 과제로 돌렸다.

황선필 등(2019)은 자동차 렌탈거래를 중심으로 차량가격이 35,950,000원인 중형자동차 1대를 렌탈할 경우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를 적용하여 자본화하는 경우 기업의 부채비율이 유의하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이 세무상 부인될 것으로 예측하였고, 이들 금액의 중요성으로 인해 자본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했다.

III. 개정된 리스기준의 세무상 쟁점과 외국의 사례

1. 개정된 리스기준에 대한 세무상 쟁점

리스이용자가 하나의 방식으로 리스를 회계처리 함으로써 리스선택권을 제한한 것이 국제회계기준의 원칙 중심(principle-based)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이는 운용 리스든 금융리스든 리스자산을 사용하고 대가를 지불한다는 점에서 사용권자산의 인식은 법적 형식보다는 자산의 할부구입과 동일한 실질 우선을 반영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는 리스 기준의 세부적인 항목의 인식에서 다양한 실질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항목들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사용하는 세법과 충돌할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본 연구는 쟁점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항목들을 제시한다.

가. 임대차용역과 리스의 구분 및 리스개정으로 인한 세무조정

(1)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에서 리스의 구분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는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계약에 리스를 포함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다.

- 9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 자체가 리스인지, 계약이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한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 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한다. 문단 B9~B31에서는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판단하는 지침을 제시한다.
- 10 일정 기간은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량(예 :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생산할 생산 단위의 수량)의 관점에서 기술될 수도 있다.
- 11 계약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만 계약이 리스인지, 리스를 포함하는지를 다시 판단한다.

만일 리스가 아닌 임대차용역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용역 공급자가 용역을 제공하는 자산의 사용권을 통제해야 한다. 반면 리스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리스계약 대상자산이 식별되어야 함과 동시에 해당 자산의 사용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해야 한다. 여기에서 자산이 식별되기 위해서는 자산이 특정되어야 하고 자산의 공급자가 자산을 대체할 권리가 없어야 한다. 또한 사용통제권이란 고객이 자산을 사용하는 것 외에도 전대리스 등을 수행하는 등 해당 자산으로부터 경제적 효익을 얻음과 동시에 고객에게 사용에 대한 지시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2) 법인세법 상 리스규정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임차료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임차계약자의 경우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운 리스회계기준은 리스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사용권자산으로 자본화해야 한다. 현행 리스 관련 조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5항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 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 이라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 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10.12.30. 개정).

(3) 세무상 쟁점

개정된 리스에서 세법의 쟁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⑤항으로, 동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리스회사)가 대여하는 리스자산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경우에는 현행 세법이 문제가 없으나,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자산(ex : 운용리스)으로 분류할 때 2019년 도입한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에 의해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매년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만일 리스회사가 운용리스로 분류했을 때 현행 세법에 따르면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이므로 리스회사가 감가상각을 수행하지만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의 규정에 따르면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으로 인식하여 미래의 리스료(임차료)를 현재가치로 인식하여 자본화하고 동시에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을 수행한다.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도입 전과 후의 운용리스를 선택한 리스이용자의 회계처리는 <표 1>과 같다.

〈표 1〉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후 운용리스 회계처리의 비교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 (기업회계기준서적용)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
운용리스 계약 체결시	없음	(차) 사용권자산 ×× (대) 리스부채 ××
기말시점	(차) 리스료(임차료) ×× (대) 현 금 ××	(차) 리스부채 ×× 이자비용 ×× (대) 현 금 ××
		(차) 감가상각비 ××
		(대) 감가누계액 ××

한편,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후에 따른 법인세법에 의한 세무조정은 <표 2>와 같다.

〈표 2〉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후 운용리스 세무조정 비교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 (기업회계기준서적용)	국제회계기준 도입 후
운용리스 계약 체결시	세무조정 없음	<손금산입> 사용권자산 ×× (유보) <익금산입> 리스부채 ×× (Δ유보)
기말	세무조정 없음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 (유보) <손금불산입> 이자비용 ×× (유보) <손 금 산 입> 리스료(임차료) ×× (Δ유보)

즉 리스이용자는 기초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부인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며, 기말에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 감가상각비, 리스부채 이자비용을 모두 부인하고 임차료를 손금산입하는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이처럼 금융리스 이외의 방식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매년 복잡한 세무조정에 따르는 조세산출비용이 가중될 수 있다. 더군다나 임대차계약이 리스계약에 포함되어 개정된 리스회계기준에 따라 자본화 하는 기업들은 위와 같은 세무조정이 매년 발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리스회계기준의 개정으로 인해 리스이용자 입장에서는 리스의 분류가 중요하지 않으므로, 만일 리스회사의 리스분류를 리스이용자가 알지 못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현행 리스회사의 분류기준에 따라 감가상각과 이자비용 및 임차료를 시부인 할지 여부에 대해 혼란을 겪을 우려가 있고 추후 과세관청과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나. 사용권자산의 분류방식과 세무조정

(1)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에서 사용권자산의 재평가

과거 리스회계기준에서 금융리스자산은 대다수 유형자산으로 분류했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권자산을 후속측정한다.

원가모형

- 30 원가모형을 적용하기 위하여, 리스이용자는 원가에서 다음을 차감하고 조정하여 사용권자산을 측정한다.
- (1)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
 - (2) 문단 36(3)에서 규정하는 리스부채의 재측정에 따른 조정
- 31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문단 32의 요구사항을 전제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요구사항을 적용한다.
- 32 리스가 리스기간 종료시점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기초자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임이 반영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시점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한다.

다른 측정모형

- 34 리스이용자가 투자부동산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0호의 투자부동산 정의를 충족하는 사용권자산에도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다.
- 35 사용권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의 재평가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유형에 관련되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그 유형자산의 유형에 관련되는 모든 사용권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즉 개정된 리스회계기준은 사용권자산을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투자부동산 중 셋으로 분류하고 있다. 원가모형의 경우 기존 리스회계기준과 다르지 않지만 공정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재평가모형이 가능하며, 투자부동산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2) 법인세법상 리스자산의 평가모형 분류와 세무상 쟁점

현행 세법에서는 금융리스로 분류할 때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만 분류되며,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하고 있다(법인세법 제24조 ⑤항).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을 원가모형으로 인식한 경우 <표 2>에서 언급한 세무조정이 발생하지만, 재평가모형으로 인식한 경우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세무조정이 추가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리스이용자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한 경우 해당 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가 운용리스로 계약하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했다면 <표 2>의 세무조정이 발생하고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가 금융리스로 계약하고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했다면 회사는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으므로 손금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며, 공정가치평가손익에 대한 시부인 세무조정이 발생한다. <표 3>에서 사용권자산의 후속측정에 따른 세무조정사항을 정리하였다.

<표 3> 사용권자산의 후속측정에 따른 세무조정 비교

후속 모형	리스 분류	취득시점	기 말
원가 모형	운용 리스	<손금산입> 사용권자산 ×× (유보) <익금산입> 리스부채 ×× (Δ유보)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 (유보) <손금불산입> 이자비용 ×× (유보) <손 금 산 입> 리스료(임차료) ×× (Δ유보)
	금융 리스	세무조정 없음 (기준과 동일)	세무조정 없음 (기준과 동일)
재평가 모형	운용 리스	<손금산입> 사용권자산 ×× (유보) <익금산입> 리스부채 ×× (Δ유보)	<손금불산입> 감가상각비 ×× (유보) <손금불산입> 이자비용 ×× (유보) <손 금 산 입> 리스료(임차료) ×× (Δ유보) <익 금 산 입> 재평가이익 ×× (기타)* <익금불산입> 재평가이익 ×× (Δ유보) * 재평가이익 발생 가정
	금융 리스	세무조정 없음 (기준과 동일)	<익 금 산 입> 재평가이익 ×× (기타)* <익금불산입> 재평가이익 ×× (Δ유보) * 재평가이익 발생 가정
투자 부동산	운용 리스	<손금산입> 사용권자산 ×× (유보) <익금산입> 리스부채 ×× (Δ유보)	<익금불산입> 재평가이익 ×× (Δ유보) <손금불산입> 이자비용 ×× (유보) <손 금 산 입> 리스료(임차료) ×× (Δ유보)
	금융 리스	세무조정 없음 (기준과 동일)	<익 금 산 입> 재평가이익 ×× (기타)* <익금불산입> 재평가이익 ×× (Δ유보) * 재평가이익 발생 가정

다. 리스부채의 후속측정과 재평가

(1)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에서 리스부채의 후속측정

개정된 리스회계기준은 리스부채의 후속측정에 대해서도 상세한 규정을 마련했다. 리스부채

의 후속측정 중 재평가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리스부채의 재평가

- 39 리스이용자는 리스개시일 후에 리스료에 생기는 변동을 반영하기 위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할 때 문단 40~43을 적용한다.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여 리스부채의 재측정 금액을 인식한다. 그러나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줄어들고 리스부채 측정치가 그보다 많이 줄어드는 경우에 리스이용자는 나머지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 40 리스이용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료를 할인하여 리스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 (1) 리스기간에 변경이 있는 경우(문단 20~21에서 기술함). 리스이용자는 변경된 리스기간에 기초하여 수정 리스료를 산정한다.
 - (2) 매수선택권의 맥락에서 문단 20~21에서 기술하는 사건과 상황을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기초자산을 매수하는 선택권 평가에 변동이 있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매수선택권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변동을 반영하여 수정 리스료를 산정한다.
- 41 문단 40을 적용할 때, 리스이용자는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남은 리스기간의 내재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하나,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평가시점의 증분차입이자율로 수정 할인율을 산정한다.

(2) 법인세법상 리스부채의 후속측정과 세무상 쟁점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리스부채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다. 하지만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에 비추어 볼 때 금융리스로 분류하는 경우 리스부채는 리스이용자의 부채로 인식된다. 하지만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에서처럼 리스부채가 재분류됨으로써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법은 이를 부인하여 세무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전대리스

(1)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에서 전대리스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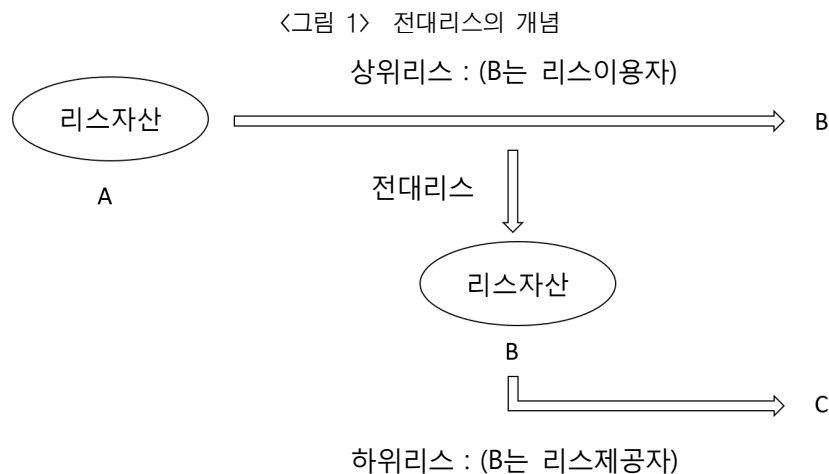
전대리스(sublease)란 리스이용자가 상위리스거래에서 사용하던 리스자산을 다른 제3자에게 하위리스하는 방식을 말한다(그림 1). 즉 전대리스를 수행하는 경우 리스이용자가 리스제공자가 된다. 또한 리스이용자가 전대리스하거나 전대리스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한다면 상위리스는 소액자산 리스에 해당하지 않는다.⁵⁾

전대리스를 수행하는 경우 리스이용자는 전대리스 이후 리스제공자가 되므로 사용권자산과 감가상각을 제거하고 전대리스 순투자와의 차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한편, 전대리스 시 리스제공자가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리스의 형태가 바뀌어질 수도 있다.

5)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문단 B7

(2) 법인세법상 전대리스에 대한 규정과 세무상 쟁점

현행 세법에서는 전대리스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전대리스 시점에 발생하는 리스계약이 기존 리스계약과는 독립적인 계약으로 판단하여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로 구분할 것이다. 그러나 전대리스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익에 대한 과세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전대리스의 상위리스와 하위리스의 형태에 따라 복잡한 세무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위리스에서 운용리스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리스이용자는 <표 3>의 세무조정이 필요하다. 이후 하위리스에서 거래상대방과 금융리스로 계약한 경우 과거의 리스이용자는 리스제공자이나 리스자산을 신고하고 감가상각을 수행해야 할 의무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있으며 전대리스를 수행한 자는 의무가 없다. 반면 상위리스가 금융리스이고 하위리스가 운용리스인 경우 리스자산을 두 번 신고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전대리스 수행시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 대여자산이 업무무관자산으로 분류될 수도 있으므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이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



마. 운용리스 이용자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현행 법인세법에 의거하면 금융리스 이용자는 리스에 따른 이자발생액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반영되었다. 하지만 개정된 리스회계기준에 따르면 운용리스 이용자라 하더라도 미래에 지급할 리스료를 자본화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한다. 따라서 매년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게 된다.

이 경우 법인세법 제18조의3과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의 경우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의미한다. 즉 운용리스 이용자의 경우에도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될 수 있다.

2. IFRS 16도입에 따른 외국의 세무상 변화

가. 영국의 사례

영국의 경우 IFRS 16은 리스회계처리를 변화시킴과 동시에 법인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리스이용자의 경우 운용리스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하므로 회계와 세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보았다.

IFRS 16에 따른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은 영국 자본공제법 2001(U.K. Capital Allowances Act 2001 rules)에 따라 한도가 있는 비용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2011년 적용된 금융법(Finance Act) 제53조는 2019년 초부터 폐지되었으며 새로운 리스회계처리가 도입된 후 리스이용자의 경우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과 금융비용의 인식이 합리적 대안이 되는 경우 인정되었다. 즉 IFRS 16의 도입에 따른 회계와 세무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새로운 회계기준을 세법이 일부 인정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영국은 OECD의 권고를 준수하기 위해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지급이자 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되었다. 즉 과세소득 계산시 순이자비용은 이자수익 및 세금과 감가상각 전 이익(EBITDA)의 일정비율(30%)의 한도를 넘을 수 없으며 이는 2017년 4월부터 적용되었다. 여기서 리스구분에 상관없이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은 지급이자 제한 규정에 포함된다. 이는 사용권자산에 대한 IFRS 16의 회계처리를 인정하는 대신 리스부채에 대해서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 네덜란드의 사례

네덜란드의 재무부(Dutch State Secretary of Finance)는 2019년 4월에 IFRS 16에 대한 세무상 영향에 대한 관점을 의회에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언급했다. 첫째, IFRS 16은 네덜란드의 산업 실무와 일치하지 않으며 세무상 목적과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도입 이후 여러 가지 비용을 야기할 것으로 보았다. 특히 리스의 감가상각비가 네덜란드의 세무상 목적과 다르므로 IFRS 16은 네덜란드 세법의 EBITDA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

둘째, 네덜란드의 재무부는 운용리스와 관련된 이자요소가 세무상 공제되는 이자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재무부의 이러한 관점은 권고사항이고 법에 의거한 것이 아니므로 차후 세무당국의 정책과 다를 수 있음을 암시한다.

다. 호주의 사례

현재 호주 세법(Section 25-110(1) ITAA 97)에서는 리스에 대한 규정⁶⁾이 금융리스(finance

6) 리스종료시점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공제여부를 다룬 내용이다.

lease)와 운용리스(operating lease)로 분류되어 있으며, 금융리스의 경우 지급하는 리스료를 자본화하는 방식으로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IFRS 16에서 리스이용자 입장에서는 과거 리스의 분류가 의미가 없으며 전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도록 바뀌었기 때문에, 리스이용자는 해당 리스가 리스회사 입장에서 금융리스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반면, IFRS 16에서 리스이용자에게 적용하는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회계처리는 과거 IAS 17의 금융리스 회계처리와 동일하다. 따라서 운용리스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도 IFRS 16에 따라 사용권자산으로 자본화한다면 현행 호주 세법에서 언급하는 금융리스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지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

라. 각국 사례를 통한 리스기준 도입에 대한 세무상 방안

IFRS 16은 2019년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전면 도입되었으나, 많은 국가들이 과거 기업회계에서 사용하던 IAS 17로 인해 세법에서도 운용리스와 금융리스로 구분하여 감가상각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금융리스에만 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존재한다. 하지만 IFRS 16에서 리스회사의 구분과 상관없이 리스이용자는 사용권자산의 단일 회계처리를 사용한다. 따라서 리스이용자는 해당 회계처리와 상관없이 리스회사의 리스분류에 따라 기존 세법을 적용받는 경우 운용리스는 복잡한 세무조정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지적을 하고 있다.

또한 세법의 규정 미비로 인해 IFRS 16에서 사용하는 사용권자산이 금융리스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며 사용권자산의 감가상각비가 상각대상이 되는지 여부, 함께 인식되는 리스부채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지급이자 제한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국가에 따라 혼란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기존 세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즉 금융리스에 대해서만 리스자산에 대한 감가상각과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을 인정한다. 둘째는 새로운 리스회계기준을 인정하여 사용권자산에 대해 기존 금융리스의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복잡한 세무조정을 줄이는 방안이 있다. 따라서 각국은 새로운 리스기준의 도입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세무조정 비용을 줄이기 위해 세법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IV. 리스도입에 대한 재무 및 세무상 효과 사례분석

본 연구는 LH마트와 SB커피라는 두 개의 사례기업을 통해 K-IFRS 제 1116호 리스 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 및 세무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두 기업은 전국에 다수의 점포를 가지고 있으며 기존의 점포 임대차계약을 새로운 리스회계기준으로 인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1. LH마트의 사례

LH마트는 가전제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다수의 매장을 임차하여 영업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기업은 별도의 연결, 종속회사가 없으므로 본 연구는 리스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재무상태표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잘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선정했다. LH마트는 국제회계기준 제 1116호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리스료(임차료)로 비용처리 했다. LH마트의 2018년 말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운용리스와 관련된 상황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표 4> LH마트의 운용리스계약(리스이용자 입장)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말	2017년 말
1년 이하	96,178,556	92,976,183
1년 초과 ~ 5년 이하	202,941,076	101,931,063
5년 초과	91,412,985	11,508,522
합 계	390,532,617	206,415,768

LH마트는 유가증권시장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2019년부터 도입예정인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를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LH마트는 운용리스로 이용하고 있는 자산의 최소리스료 합계는 372,352백만원이며, 이를 자본화한 경우 자산과 부채가 각각 349,855백만원, 336,592백만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LH마트의 2018년 말 운용리스의 자본화 전 자산과 부채 및 부채비율은 <표 5>와 같다.

<표 5> LH마트의 부채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말	2017년 말
자산	3,117,064	3,204,628
부채	1,055,205	1,178,850
자본	2,061,859	2,025,778
부채비율(부채/자본)	51.18%	58.19%

LH마트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운용리스의 사용권자산 인식과 리스부채 인식으로 인한 2018년도 말 부채비율의 변화는 <표 6>에 제시하였다. 실제로 2018년 말 부채비율에 비해 15.89%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표 6〉 LH마트의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도입 이후 조정부채비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말	리스자본화 효과	리스회계처리 반영이후 금액	조정된 부채비율 (부채/자본)
자산	3,117,064	+ 349,855	3,466,919	67.07%
부채	1,055,205	+ 336,592	1,391,797	
자본	2,061,859	+ 13,263	2,075,122	

또한 운용리스의 자본화로 인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인식은 추후 LH마트가 운용리스기간동안 자산과 부채 각각 349,855백만원과 336,592백만원의 세무조정 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5년으로 나누어 7) 연간 세무조정 금액을 추정한다면 매년 700억원의 익금과 손금에 대한 세무조정이 각각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2018년 말 현재 LH마트 자산규모의 약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2019년 LH마트는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를 실제로 도입하며 실무적 간편법을 사용했다. 이는 리스기준이 도입된 2019년 1월 1일을 최초적용일로 하여 최초적용일에 계약이 리스인지 여부를 이후에 다시 판단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경우 리스기준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누적효과를 2019년 1월 1일에 반영하여 비교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LH마트가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를 도입함으로써 인식한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각 316,831백만원, 303,774백만원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권자산으로 인해 유동자산 121백만원이 감소, 비유동자산 303,827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리스부채로 인해 유동부채 73,141백만원, 비유동부채 230,617백만원이 증가했다. 이처럼 2018년의 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리스부채에 대한 증분차입이자율의 조정, 소액리스와 리스만기가 도래하거나 새로운 리스계약이 체결된 부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LH마트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변화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의 인식으로 인한 증감항목을 2019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했다. 실제로 LH마트는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가 각각 71,762,410천원과 70,394,763천원이 증가했다.

2. SB커피의 사례

SB커피는 외국과의 합작을 통해 커피전문점에서 주로 커피의 수입 및 제조, 판매를 영업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 기업은 다른 커피전문점과 달리 프랜차이즈로营业을 수행하지 않으며 우리나라의 전 지역에서 다수의 매장을 갖고 있으며 이를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

7) 이는 Imhoff et al.(1997)이 리스를 자본화할 때 내용연수를 5년으로 가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이다.

다. 즉 SB커피의 각 매장은 본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운영한다. 특히 이 기업은 비상장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자회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리스 도입효과를 확인하기에 적합하다.

SB커피는 K-IFRS 제1116호의 도입으로 인해 각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현재가치를 사용권자산으로 자본화하고 리스부채를 인식하였다. 2019년 감사보고서를 살펴보면, 2019년 말 현재 사용권자산은 2018년 0원에서 2019년 362,189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유동리스부채는 2018년 0원에서 2019년 74,384백만원, 비유동리스부채는 2018년 0원에서 2019년 248,618백만원으로, 총 리스부채는 2018년 0원에서 2019년 323,002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SB커피가 임대차계약을 자본화함으로써 증가한 리스부채는 2018년 총부채 크기와 유사하며 실제로 SB커피는 2018년 부채비율이 83.98%에서 2019년 156.22%로 급증하였다.

SB커피의 당기순이익은 2018년 111,992백만원에서 2019년 132,804백만원으로 증가하였다. 2019년 초 회사는 리스자본화로 인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비용(운용리스비용) 중 82,195백만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사용권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79,798백만원과 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7,351백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다. 실제로 SB커피의 경우 사용권자산의 증가로 인해 총자산이익률의 크기는 2018년 14.49%에서 2019년 10.62%로 급격히 감소하였다(표 7 참조).

〈표 7〉 SB커피의 리스도입으로 인한 부채비율과 총자산이익률의 변화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말	2019년 말
자산	773,041	1,250,842
부채	352,875	762,643
자본	420,166	488,199
당기순이익	111,992	132,804
부채비율	83.98%	156.22%
총자산이익률	14.49%	10.62%

한편, SB커피의 리스인식으로 인한 이연법인세 금액도 상당히 증가했다. 2019년 말 사용권자산으로 인해 증가한 이연법인세부채는 87,649백만원, 리스부채로 증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78,166백만원이다. 이는 2018년 말 이연법인세부채 37,975백만원에서 2019년 말 인식한 이연법인세부채 125,791백만원으로 증가한 요인, 2018년 말 이연법인세자산 66,497백만원에서 2019년 말 인식한 이연법인세자산 163,074백만원으로 증가한 요인의 대부분이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에서 발생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LH마트와 SB커피의 사례를 살펴보면 2019년 리스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부채비율 등 재무적 효과에 미치는 영향도 중요하지만,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의 급격한 증가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임대차계약을 자본화하는 기업 입장에서 리스 관련 세무조정 금액의 크기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각 사용권자산(점포계약) 별 세무조정으로 발생하는 개별 유보액의 관리가 매우 복잡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V. 리스 관련 세법의 유지와 개정에 대한 비교

1. 현행 세법을 유지하는 방안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가 도입된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2020년 적용 세법은 기존의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구분을 유지하여 세무상 특별한 변화는 없다. 이러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첫째,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리스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가 적용되더라도 이는 상장기업과 자발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기업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비상장기업의 대다수는 현행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하므로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에 대한 구분은 여전히 존재한다.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의 적용시 납세자의 세법에 대한 혼동을 예방하기 위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리스회계처리의 경제적 실질은 물적금융으로, 리스이용자의 사용권에 대한 자산과 부채의 인식이다. 하지만 각각은 미래의 현금흐름의 유입과 유출을 현재가치로 인식하는 것이므로 이를 현재 시점의 과세소득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특히 리스의 법적 소유권은 리스회사에게 귀속되므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사용하는 법인세법이 굳이 운용리스에 대한 사용권자산을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은 기업회계의 존중으로 인해 금융리스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리스자산의 감가상각 및 리스부채에서 비롯되는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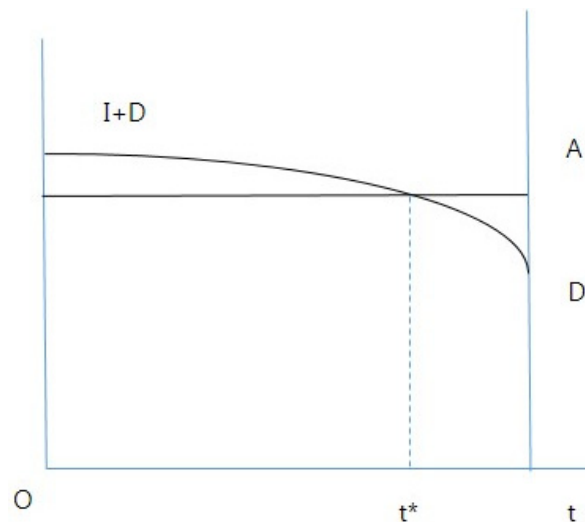
하지만 새로운 리스회계기준 도입으로 인한 세법의 정비는 필요하다. 2020년 3월 13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고 명문화 하였다. 이는 운용리스의 사용권자산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여진다. 하지만 현재 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금융리스의 정의가 새로운 리스기준을 적용할 때 정의의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등 상충되는 규정이 없는지 세부적인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전대리스 등 기존 세법에 나타나지 않는 경제적 사건들에 대해 납세의무자가 명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침이 필요할 것이다.

2. 현행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가 도입됨으로써 현행 세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새로운 리스회계기준이 여러 가지 세무적 이슈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인세법이 과거 기업회계기준서를 준용하여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의 구분 유지가 계속되는 경우 지속적인 세무조정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운용리스 이용자는 세무조정의 횟수와 발생크기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구분은 리스기간 전체로 본다면 총 비용은 동일하다. 즉 매기간 지급하는 정기리스료가 동일 금액인 경우, 리스기간 전체(t)를 기준으로 운용리스에서 발생하는 리스료(임차료 : A)의 합계와 금융리스에서 발생하는 이자비용(I)의 합계와 감가상각비(D)의 합계는 동일하다(그림 3). 물론 초반에는 금융리스의 경우 회계상 비용의 합계(이자비용과 감가상각비)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그림 2>의 t^* 에서 역전된다. 하지만 리스를 자본화할 때 발생하는 할인율(내재이자율 또는 증분차입이자율)이 0에 가까울수록 금융리스와 운용리스 간 비용인식의 차이도 0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리스기간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세무조정의 실익이 크지는 않다.

<그림 2> 리스기간(t)동안 이자비용(I)과 감가상각비(D), 리스료(A)의 관계⁸⁾



8) Imhoff et al.(1991) 인용.

3. 리스관련 세법을 개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침

만일 리스 관련 세법이 기업회계의 존중에 의해 제정되었다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기업을 위해 세무상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의 도입으로 인해 운용리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세무조정이 발생하며 그 금액의 크기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 리스에 대해 현행 리스회사 중심의 감가상각비 인식 여부의 세법조항에 리스이용자가 적용할 수 있는 감가상각 인식 여부의 세법조항을 신설하거나 리스적용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신설하여 조세산출비용과 조세쟁송 가능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방법 1의 경우 모든 법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리스회사의 감가상각비 인식 여부에 리스이용자의 특례기준을 부여하여 사용권자산의 회계처리를 인정해주는 방식이 있다. 구체적인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방법 1

증	전	개	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⑤ 좌동		
자산을 시설대여 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 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리스 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10.12.30.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⑥ 신설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설대여 받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이용자라 한다)가 리스회사의 리스분류에 상관없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리스자산(사용권자산)을 인식하는 경우 리스자산(사용권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방법 2의 경우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는 주로 상장기업과 이를 도입한 비상장기업이 그 적용 대상이므로 이를 적용받지 않는 기업, 즉 현행 기업회계기준서를 적용받는 기업은 문제가 없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 적용 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에 추가하여 리스이용자의 사용권자산과 상각액을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있다.

(2) 방법 2

종 전	개 정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신설 자산을 시설대여 받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이용자라 한다)가 리스회사의 리스분류에 상관없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리스자산(사용권자산)을 인식하는 경우 리스자산(사용권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해당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사용권자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리스기간 동안 동일하므로 과세당국 입장에서는 조세산출비용을 줄이는 것이 더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본 연구에서처럼 세법을 개정하는 경우 리스이용자의 경우 매년 발생하는 세무조정에 따르는 조세산출비용이 경감되는 효익을 얻을 수 있으며 현행 리스회사의 분류기준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추후 발생하는 조세쟁송 등 충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단, 조세특례제한법의 조정은 일몰기간이 있으므로 기간만료에 대한 폐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방법 1이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VI. 결 론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가 도입된 이후부터는 운용리스 사용자의 경우 세무조정이 항상 발생하게 된다. 그 이유는 리스회사가 운용리스로 분류했다고 하더라도 리스이용자는 이를 사용권자산으로 자본화하므로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을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현행 리스에 대한 세법의 감가상각비 기준은 리스회사의 리스분류방식에 따라 금융리스와 그 외의 리스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외의 리스(과거 운용리스)로 분류하는 경우 감가상각비를 부인하게 된다. 따라서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에 대한 손금불산입이 발생하고 동시에 임차료에 대한 손금인식 세무조정을 시행해야 한다. 이처럼 운용리스를 사용하는 리스이용자 입장에서 복잡한 세무조정이 발생하게 되고 조세산출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세무조정은 항공업과 해운업 외에도 임차료 지불기업에서 발생하게 되므로 점포별로 복잡한 유보액의 관리 는 물론 해당 세무조정의 대상 범위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의 도입으로 인해 과거 임대차계약에서 단순 비용처리하거나 운용리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복잡한 세무조정이 발생하며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평가, 리스부채의 평가 및 전대리스 등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통해 새로운 리스기준의 도입으로 인해 각국이 운용리스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에 대해 세무상 쟁점이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본 연구는 LH마트와 SB커피의 사례를 통해 사용권자산의 자본화 금액으로 인한 재무구조의 변경이라는 회계상 수치 변경은 물론,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리스 관련 세무조정 금액의 크기도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 리스 관련 세법을 유지하는 방안과 기업회계의 개정으로 인해 세무상 발생할 수 있는 조정비용이 그 실익에 비해 큰 경우 두 가지 방법, 즉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방법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국제회계기준 제1116호를 적용하는 기업들에 한해 회계처리를 인정하는 방법을 함께 제시하였다. 리스관련 세법규정이 기업회계의 존중원칙에서 출발하였음을 상기한다면 두 방법 모두 리스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한 조세산출비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은 새로운 리스회계기준이 항공업과 해운업 등 특정 산업에 재무적 효과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는 유통업 등 일반 기업의 장기 임대차계약에서도 복잡한 세무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혔다. 둘째, 본 연구는 리스와 조세관련 선행연구를 확장하여 기존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다양한 세무조정 형태와 이로 인한 세무상 효과, 외국의 리스관련 세법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조세당국, 기업 등 납세의무자에게 리스의 세무상 효과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유정 · 최 관 · 최성호. 2019. “K-IFRS 제1116호(리스)기준이 연속항해용선계약(CVC)에 미치는 효과 : 대한해운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28권 제6호 : 279-316.
- 권혁윤 · 정지선. 2016. “레버리지리스에 대한 세법상 규제제도”. 조세학술논집 제32권 제3호 : 165-191.
- 김현동. 2017. “리스에 관한 국제회계기준의 변경과 세법상 과제”. 회계와정책연구 제22권 제2호 : 119-149.
- 손 혁 · 이중희. 2015. “리스선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새로운 시각”. 회계학연구 제40권 제5호 : 105-134.
- 손 혁 · 강순경. 2018. “리스선택이 경영자의 보상과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경영학회지 제15권 제2호 : 1-19.
- 신승묘. 2011. “운용리스의 자본화가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의 신용평가”. 세무와 회계저널 제12권 제3호 : 53-80.
- 신승묘. 2015. “리스와 부채 사이의 대체관계와 기업의 조세부담 및 부채수용력”. 회계학연구 제40권 제3호 : 1-42.
- 이중희. 1999. “리스이용자의 회계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요인”. 회계학연구 제24권 제1호 : 141-162.
- 이화득. 2001. “리스선택과 기업특성에 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26권 제3호 : 123-147.
- 정혜영 · 김남인. 2000. “리스이용기업의 회계처리방법 선택 요인과 리스회계정보의 기업가치 반영에 대한 연구”. 회계학연구 제25권 제1호 : 21-55.
- 황선필 · 조형태 · 최승로. “2019. K-IFRS 제1116호가 기업회계 및 세무에 미치는 영향-자동차 렌탈 거래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제20권 제4호 : 95-124.
- Imhoff, E. A., R. C. Lipe, and D. W. Wright. 1991. Operating Leases : Impact of Constructive Capitalization. *Accounting Horizon* 5 (1) : 51-63.
- Imhoff, E. A., R. C. Lipe, and D. W. Wright. 1997. Operating Leases : Income Effects of Constructive Capitalization. *Accounting Horizon* 11 (2) : 12-32.
- Ely, K. M., 1995. Operating Lease Accounting and the Markets' Assessment of Equity Risk.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33 (2) : 397-415.

Tax Accounting Effect by the Adoption of K-IFRS 1116 Lease*

Hyuk Shawn** · Jae-gyung Jung***

〈Abstract〉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1116(IFRS 16 lease) restricts the lessee's option to lease. In other words, the lessee must capitalize as a licensed asset regardless of the lessor's lease classification and recognize the lease liability at the same time. This will lead to changes in capital structure in many industries, such as many airlines and retailers. In addition, K-IFRS 1116 requires capitalization of leases excluding short-term leases and small amount leases, so tax adjustments are expected to increase in addition to financial effects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distribution. In the current corporate tax law, the subject of processing of the leased asset is different and the subject of depreciation is different depending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lessor.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current tax laws, operating lease users will experience complicated tax adjustments and the importance of the amount will be significant. In addition, inadequate regulations in tax law, such as the classification of leased assets and the evaluation of lease liabilities, are expected to increase tax adjustment costs. Therefore, this study showed that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or the Corporate Tax Act in respect of corporate accounting.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s plan will help alleviate the cost of tax calculation due to the introduction of IFRS 16.

〈Key words〉 Lease, K-IFRS 1116 (IFRS 16), Licensed assets, Lessees, Corporate tax law, Tax adjustment

* This study is "Thesis for the Korean Tax Association 2020 Spring New Researcher Support Project". The authors are grateful to the editor-in-chief of the Journal of Taxation and Accounting and the anonymous reviewers.

** Associate Professor, Business School, Keimyung University, hshawn@kmu.ac.kr, First Author

*** Assistant Professor, Business School, Dong-A University, jgyung0905@dau.ac.kr, Corresponding Author